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1.·2.(생략)</p> <p>3. <u>트러스톤 칭기스칸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</p> <p>4.(생략)</p> <p>5. <u>트러스톤 벨류웨이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</p> <p>6. <u>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</p> <p>7. <u>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연금저축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</p> <p>8. <u>트러스톤 장기고배당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1.·2.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트러스톤 장기성장40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5. <u>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40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</p> <p>6. <u>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4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</p> <p>7. <u>트러스톤 장기고배당 4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</p> <p><u>부칙</u>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</p>